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655호

「교통안전진단지침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교통안전진단지침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그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·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에 철도협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국토교통부령 제1379호, '24.8.16 개정·'24.8.17 시행)됨에 따라,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·훈련시행 기관이 추가됨에 따른 교육 이력관리를 위해 기관 간 교육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, '한국도로교통공단'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도로안전진단 점검표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교통안전정책과장)에게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622호
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

- 전화(☎) 044-201-3868, 3866 / 팩스 044-201-5586